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16
------------	------

2020년 9월 8일  
교 육 위 원 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 1. 제안이유

-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보행도로의 주민 통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청이 서울시 주민공모 『구릉지(시흥2동 금하로30길) 이동편의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학생 안전 도모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학교 부지 내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토지 개요

- 위치 : 금천구 시흥2동 1013-1(서울금동초등학교)
- 면적 : 13,255.2㎡
- 소유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건물현황,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학교별 내용은 설치 동의자료 별첨

### 나. 사업 개요

- 위치 : 금천구 시흥2동 1013-1(서울금동초등학교)중 일부
- 목적 : 주민 이동편의 개선 및 학생안전 도모
- 사업주체 : 금천구청(소유권 귀속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규모 :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설치를 위하여 설계될 내역
- 사업내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사용 면적(㎡)	사업예산
금천구 시흥동 1013-1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용지	230㎡*	30억 이내

\* 수직형EV, 보행데크 설치 면적

※ 토지사용 면적 및 사업예산은 실시설계 시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2020.09.~2021.12.

### ○ 기타사항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학생의 보행동선 분리 시공
-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거나 해당토지의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원상복구비용은 금천구청 부담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16호로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주민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학교 부지 내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를 설치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학교부지에 인근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천구청의 예산으로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표-1] 금동초 교내 통학로 이용현황<sup>1)</sup>

날짜(요일)	노약자		학생 및 성인	전체통행자 수
	유아	노인		
7.16.(화)	116명	287명	651명	1,054명
7.17.(수)	98명	273명	709명	1,080명
7.18.(목)	50명	254명	670명	974명

1) '금동초 교내 통학로 이용현황 조사 결과', 금동초-7222, (2019.7.22.)

- 조사기간 및 시간 : 2019.7.16.(화)~7.18.(목) 07:30~20:30

- 조사방법 : 학교보안관이 정문과 후문 통행자 수 집계(등하교 및 학교방문자 제외)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제13조2)에서는 교육감 이외의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추진으로 인해 설치되는 해당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인지 여부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영구시설물이란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물<sup>3)</sup>을 말하는 것인바, 엘리베이터<sup>4)</sup>의 경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설비로서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인 학교부지에 금천구청 소관 재산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교육감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축조가 금지된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해당 시설물은 금천구가 지역주민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라는 점에서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5)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2)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공유재산 관리실무, 서울시교육청, 2017, 259쪽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0.<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재산(이하 "공공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것입니다.

- 더욱이 해당 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금천구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상호 문서를 통한 협약을 체결<sup>6)</sup>하였는바, 동 시설물을 금동초 내 학교 부지에 설치함에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해당 시설물 설치 공사의 작업 구간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있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학생과 주민의 보행동선을 분리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6)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 2020.7.29.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1816
----------	------

제출연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보행도로의 주민 통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청이 서울시 주민공모『구릉지(시흥2동 금하로30길) 이동편의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나. 동 사업은 학생 안전 도모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학교 부지 내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개요

- 위치 : 금천구 시흥2동 1013-1(서울금동초등학교)
- 면적 : 13,255.2㎡
- 소유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사업 개요

- 위치 : 금천구 시흥2동 1013-1(서울금동초등학교)중 일부
- 목적 : 주민 이동편의 개선 및 학생안전 도모
- 사업주체 : 금천구청(소유권 귀속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규모 :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설치를 위하여 설계될 내역

○ 사업내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사용 면적(m <sup>2</sup> )	사업예산
금천구 시흥동 1013-1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용지	230m <sup>2</sup> *	30억 이내

\* 수직형EV, 보행데크 설치 면적

※ 토지사용 면적 및 사업예산은 실시설계 시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2020.09.~2021.12.

○ 기타사항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학생의 보행동선 분리 시공
-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거나 해당토지의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원상복구비용은 금천구청 부담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19.09.~2020.06. : 「금동초 학생안전 및 시설물 보호 대책을 위한 협의체」 운영(주관: 남부교육지원청, 구성: 교육지원청, 금동초, 금천구청, 금천1번가리빙랩, 관악산벽산타운5단지, 협의 횟수: 6회 운영)
- 2020.01.16. :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공모 공고(서울시)
- 2020.04.23. : 선정 발표(서울시)시흥2동 금동초교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선정
- 2020.06.~07. : 금동초 이동편의개선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허가 검토를 위한 협의 진행(서울시, 금천구청, 서울시교육청, 금동초)
- 2020.07.21. : (금천구) 서울금동초교 내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 관련 영구시설물의 축조계획서 제출
- 2020.07.29. : (교육지원청 - 금천구청 - 금동초)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라. 향후 추진일정

- 2020.09.~12. : 이동편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금천구)
- 2021.12.까지 :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및 준공(금천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 (2020.7.2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금동초등학교 협약 체결)

라. 기타

o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본구상도(안)



- (목적)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예산) 30억 원
  - (방법) 수직형 엘리베이터 + 보행데크 설치(금동초 내 급경사 보행구간)
  - (담당부서) 시청(도시재생과), 금천구청
- ※ 이동편의시설 위치 및 노선 등은 실시설계 시 확정 예정

o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1】

#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서울금동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이동편의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 라 한다) 소관 재산인 토지(금천구 시흥동 1013-1)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로 등 “이동편의시설” 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은 주민의 이동편의개선 및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부지 일부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주민과 학생의 보행동선은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구분	소유자	지목	전체 면적(m <sup>2</sup> )	이동편의시설 사용 면적(m <sup>2</sup> )	사업예산
금천구 시흥동 1013-1	토지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용지	13,255.2m <sup>2</sup>	230m <sup>2</sup>	30억 이내

※ 토지사용 면적 및 사업예산은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여 확정

제4조(시설 운영 주체)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귀속하고, 구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

- 제5조(조건 및 역할분담)** ①교육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축조승인 및 사용료 면제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②학교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③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서울금동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설계 과정에서 학교장과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구청장은 교특회계 소관 토지에 이동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동편의시설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해당토지의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 학교장, 구청장간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 ⑤제4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경우 구청장은 공사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비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⑥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로 보아 면제할 수 있다.
- ⑦위 조항을 포함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제6조(정보교류)** 교육장, 구청장, 학교장은 본 협약 상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 현황 및 정보 등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한다.

**제7조(의무 및 책임)** 협약 당사자인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영구시설물 축조는 서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부결될 경우 재협의하여야 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제9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사 착수전까지 별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재 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청장 유 성 훈



서울금동초등학교  
교장 이 영 자

---